

과징금 산정기준(제17조의3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.
- 다. 나목의 업무정지 기간은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기간(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라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의 표에 따라 산출한다.
- 마. 연간 총매출금액은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신규사업·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·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거나 조정한다.
- 바.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.

2. 과징금 부과기준

등급	전년도 연간 총매출금액	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
1	3천만원 미만	7,000원
2	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	18,600원
3	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34,900원
4	1억원 이상 ~ 2억원 미만	46,000원
5	2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	52,000원
6	3억원 이상 ~ 4억원 미만	58,000원
7	4억원 이상 ~ 5억원 미만	64,000원
8	5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70,000원
9	6억원 이상 ~ 7억원 미만	76,000원
10	7억원 이상 ~ 8억원 미만	86,000원

11	8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	97,000원
12	9억원 이상 ~ 10억원 미만	109,000원
13	10억원 이상 ~ 11억원 미만	120,000원
14	11억원 이상 ~ 12억원 미만	132,000원
15	12억원 이상 ~ 13억원 미만	143,000원
16	13억원 이상 ~ 14억원 미만	153,000원
17	14억원 이상 ~ 15억원 미만	166,000원
18	15억원 이상 ~ 16억원 미만	178,000원
19	16억원 이상 ~ 17억원 미만	189,000원
20	17억원 이상 ~ 18억원 미만	201,000원
21	18억원 이상 ~ 19억원 미만	212,800원
22	19억원 이상 ~ 20억원 미만	224,000원
23	20억원 이상	230,000원